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8일, 손명수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3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손명수의원)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 · 절차 · 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면허의 일종으로, 자격증명의 종류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으로 구분되며¹⁾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59,377개의 자격증명이 취득되었음.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 현황 】

(‘25.8.31. 기준, 단위 : 명)

연도	조종사			항공 기관사*	항공 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운항 관리사	계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계	7,526	19,448	9,469	12	18,767	2,435	1,720	59,377
2000	291	267	24	0	241	85	12	920

1)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5. 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2001	291	449	20	0	371	85	28	1,244
2002	176	408	46	0	438	59	34	1,161
2003	50	424	49	7	370	57	31	988
2004	37	381	32	0	502	95	24	1,071
2005	78	371	257	0	443	148	33	1,330
2006	314	445	340	1	362	105	28	1,595
2007	342	438	355	0	470	108	46	1,759
2008	317	375	386	0	601	86	73	1,838
2009	240	409	258	3	611	63	84	1,668
2010	261	307	364	1	516	46	58	1,553
2011	264	380	380	0	388	89	59	1,560
2012	361	600	391	0	497	73	86	2,008
2013	270	785	431	0	615	79	63	2,243
2014	306	869	492	0	709	87	62	2,525
2015	374	1,016	601	0	828	81	70	2,970
2016	437	1,228	581	0	945	101	89	3,381
2017	404	1,462	573	0	1,290	139	85	3,953
2018	390	1,560	550	0	1,142	83	87	3,812
2019	523	1,729	538	0	1,267	99	120	4,276
2020	353	1,052	501	0	1,258	98	96	3,358
2021	261	895	494	0	1,684	131	75	3,540
2022	208	766	431	0	1,133	112	104	2,754
2023	267	1,010	493	0	778	115	86	2,749
2024	370	1,120	515	0	772	120	96	2,993
2025	341	702	367	0	536	91	91	2,128

※ 자료 : 국토교통부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²⁾,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³⁾

2) 「항공안전법」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항공안전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

다만, 현행법은 다른 면허제도와 달리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의 실무경험 요건이나 교육훈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및 최근경험 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현행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증명의 유효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 항공종사자들의 기량과 실무 경험 등을 주기적으로 입증하여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국제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 ICAO 부속서1 1.2.5. Validity of Licences) 체약국은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 보유자가 기량(competency) 유지 요건과, 최근 실무경험 요건(recent experience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유효하지 못하도록 확인·관리하여야 함	○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는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Part-FCL) 등 관련 법령에서 자격증명과 한정 등 유효성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량 및 최근 경험 요건과 자격증명 유효성 확인을 위한 항공당국자의 점검 및 자격증명 갱신 등을 규정함 ○ 자격증명 및 한정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항공당국이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조종사 한정에 대한 유효기간과 갱신 및 회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table><tr><th>조항</th><th>내용</th></tr><tr><td>ICAO ANNEX 1 1.2.5.1</td><td>A Contracting State, having issued a licence, shall ensure that the privileges granted by that licence, or by related ratings, are not exercised unless the holder maintains competency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ent experience established by that State.</td></tr></table>	조항	내용	ICAO ANNEX 1 1.2.5.1	A Contracting State, having issued a licence, shall ensure that the privileges granted by that licence, or by related ratings, are not exercised unless the holder maintains competency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ent experience established by that State.	<table><tr><th>내용</th></tr><tr><td> ○ (조종사>최근 경험 요건>승객수송)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060(Recent experience)의 (b)에 따라, 상업운송 또는 승객운송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장 또는 부기장은 다음의 최근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근 90일 이내,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3회 이상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야간 비행 시: 야간에 비행을 수행하려는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야간에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최소 1회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했거나, 계기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종사>한정>유효기간)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740(Validity and renewal of class and type ratings)의 (a)에 따라, 등급 및 형식 한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단일 조종사·단발기 한정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임 </td></tr></table>	내용	○ (조종사>최근 경험 요건>승객수송)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060(Recent experience)의 (b)에 따라, 상업운송 또는 승객운송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장 또는 부기장은 다음의 최근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근 90일 이내,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3회 이상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야간 비행 시: 야간에 비행을 수행하려는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야간에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최소 1회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했거나, 계기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종사>한정>유효기간)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740(Validity and renewal of class and type ratings)의 (a)에 따라, 등급 및 형식 한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단일 조종사·단발기 한정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임
조항	내용						
ICAO ANNEX 1 1.2.5.1	A Contracting State, having issued a licence, shall ensure that the privileges granted by that licence, or by related ratings, are not exercised unless the holder maintains competency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ent experience established by that State.						
내용							
○ (조종사>최근 경험 요건>승객수송)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060(Recent experience)의 (b)에 따라, 상업운송 또는 승객운송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장 또는 부기장은 다음의 최근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근 90일 이내,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3회 이상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야간 비행 시: 야간에 비행을 수행하려는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야간에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최소 1회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했거나, 계기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종사>한정>유효기간)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740(Validity and renewal of class and type ratings)의 (a)에 따라, 등급 및 형식 한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단일 조종사·단발기 한정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임							

다만, 다음과 같이 자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갱신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4조제4항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격증명의 갱신 의무만을 두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갱신기간’의 의미와 자격증명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법안 취지상 ‘3년 이상의 갱신기간’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므로 아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통수단의 면허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도선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 취득자로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자격증명의 효력 및 갱신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3년 이상)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항공종사자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유사 입법례 】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u>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u>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u>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u>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u>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u>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u>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u>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u>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도선법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u>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u>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u>5년으로 한다.</u>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u>유효기간 만료 전에</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u>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u>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u>

둘째, 안 제34조제4항에서 자격증명을 언제까지 갱신하여야 하는지 갱신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안 제34조제6항에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의 효력이 언제부터 정지되는지 정지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안 제34조제6항은 미갱신 시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하위법령 위임규정만 두고 있음.

정지된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갱신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증명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와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정리하면,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N년’으로 규정하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갱신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명의 효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고,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증명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